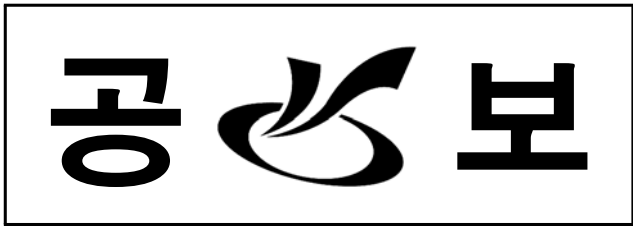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9호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호선) 실시
계획인가 고시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1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0호 공시송달공고 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1호 공시송달공고 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2호 공시송달공고 1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3호 공시송달공고 15

회							
람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4호 인천광역시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5호 신조 공인 공고 3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34

고	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5호선, 사업명: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호선)
【명칭】 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133m, B = 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10월 ~ 2009.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토 지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현실적 이용 상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①	가좌동	121-30	도	도로	12	12	0	윤재중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③ 307동906호	
②	가좌동	122-3	도	도로	36	36	0	인천광역시 서구		
③	가좌동	129-5	전	도로	133	133	0	박미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29동 1303호	
④	가좌동	122-18	대	도로	518	518	0	인천광역시 서구		
⑤	가좌동	122-17	대	인도	9	9	0	인천광역시		
⑥	가좌동	산51-1 0	임	도로	109	109	0	조인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5-47번지	압류:서인천세무서 압류:북인천세무서 가압류:농업협동 조합중앙회(인천가 좌지점) 가압류:농업협동 조합중앙회(인천지 역본부) 압류:인천광역시 서구 압류: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817	817	0			

지 장 물 조 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현황	물건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①	가좌동 산50-10	건물(상가)	샌드위치판넬	7.0	2.6	상가	가좌동 129-3	김일권	도시계획시설(도로: 소3-5호선)에 편입 가좌동 산50-10번지 (소유자:조인근)토지 에 무단점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 2008-51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석남동 범우연립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2.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7-25번지
3. 사업시행자 : 범우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두욱)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대지면적 : 2,999.6m²
 - 나. 연 면 적 : 12,722.19m²
 - 다.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라.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 세 대 수 : 91세대
 - 바. 층 수 : 지하2층 / 지상15 ~ 23층 / 1개동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0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및 물건 등을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에 의거하여 개별 통보[재결신청 열람(변경)공고] 하였으나,

수용재결관련사항을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공고기간 : 2008. 11. 26 ~ 2008. 12. 11

4. 공시송달내용

가. 수용재결관련 사항

1)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4차)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2)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수

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바, 토지나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자(토지나 물건의 임차인, 저당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및 기타채권 등의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시 건물주(임대인)보상금 등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용재결 신청 토지·물건의 소재지 및 지번 (공고 사유 : 우편물 반송)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지목	편입면적(㎡)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부상 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9-47	토지	잡	105	강희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서재숙 외 72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1. 25 ~ 2008. 12. 09(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8년 12월 09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자동차의무보험부과예고통보서반송분공시송달내역

연번	접수번호	납부자명	주소	사유	회차	비고
1	00028288	서재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6번지 38호 28동 4반 대일그린빌라 2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	00028323	윤종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7번지 28동 4반 유영아파트 102동 3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	00028324	이은복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8번지 3호 9동 3반 상명빌라 5동 301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	00028332	정미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8동 4반 금호아울름아파트 104동 11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	00028342	방용식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3번지 2호 31동 5반 극동푸른아파트 106동 2105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	00028353	이동호	인천광역시 서구 월당동 567번지 12동 4반 대한항공사원인대아파트 107동 1104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7	00028354	권주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341번지 14호 28동 5반 하나아파트 205동 4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8	00028356	김수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번지 23호 19동 3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9	00028368	정화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4동 1반 라이프빌라 1동 2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0	00028372	MOHAMED RAED H (주)삼성이엔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0번지 6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1	0002837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4번지 2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12	00028386	홍운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7동 3반 금호아울름아파트 108동 20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3	00028410	정찬열(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2번지 4호 3동 36/1 316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4	00028422	김영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6번지 8호 22동 4반 반석빌라 3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5	00028445	유금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51동1,2단지27/2 상보해피하임 503동 1204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6	00028446	윤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6동 5반 동아아파트 105동 12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7	00028449	전비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8번지 10호 30동 3반 영성아파트 4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8	00028450	김대훈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1번지 1호 35동 3반 그린빌리지디세대주택 4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19	00028456	김하철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6동 1반 동문굿모닝힐아파트 601동 10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0	00028471	정미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12동 5반 주공아파트 119동 504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1	00028488	최경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24번지 9호 20/2 백두아파트 805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2	00028514	주영광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488번지 4호 23동 1반 평화빌라 1동 4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3	00028531	조필용, 차공신(공채면제)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03번지 4호 8동 3반 목천신도브레이크1차아파트 103동 302호	이사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24	00028552	이동행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79번지 5/4 동부아파트 104동 16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5	00028553	김용남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2번지 4호 38동 1반 신아아파트 5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6	00028563	정희진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1동 5반 당하2차풍림아파트 105동 3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7	00028619	이범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8번지 10호 9동 5반 우일주택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8	00028655	이영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7번지 40호 23동 6반 경인빌라 1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29	00028683	박경성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30	00028685	송명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32번지 17호 54동 1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1	00028677	조창익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2번지 1호 18동 4반 신영아파트 405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2	00028703	김영은의 신앙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8번지 33호 9/3 상명빌라 4동 3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3	00028728	김종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동 6반 풍림아파트 824동 11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4	00028745	(주)삼성이엔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4번지 2호 22동 201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35	00028770	이왕승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8번지 10호 22동 2반 세명주택 2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6	00026777	최종삼(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번지 28호 16/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번지 28호 16/1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7	00026782	최용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380호 8동 4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380호 8동 4반	주 소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38	00026785	경화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4동 1반 라이프빌라 1동 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4동 1반 라이프빌라 1동 2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39	00026790	(주)블레노코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504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0	00026791	(주)정문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번지 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번지 234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1	00026806	김형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물로지구 51동 1.2북 2775 삼문해피하임 507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물로지구 51동 1.2북 2775 삼문해피하임 507동 3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42	00026820	양윤석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8번지 1호 17동 4반 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8번지 1호 17동 4반 2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43	00026836	(주)세에케이코즈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534번지 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534번지 15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4	00026848	BAYANINKH AL TANZIL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2번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2번지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5	00026849	정미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00번지 7호 30동 7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00번지 7호 30동 7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46	00026856	주관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번지 8호 13동 5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번지 8호 13동 5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47	00026863	(주)신안전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838번지 2호 1층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838번지 2호 1층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48	00026870	김명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4번지 24호 16동 5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4번지 24호 16동 5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49	00026885	황현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번지 22호 13동 5반 오영빌라 1동 4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번지 22호 13동 5반 오영빌라 1동 4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0	00026886	이학영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동리 427번지 1호 삼일원앙아파트 104동 709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동리 427번지 1호 삼일원앙아파트 104동 709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51	00026804	조만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28번지 28호 47동 5반 삼우타운빌라 7동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28번지 28호 47동 5반 삼우타운빌라 7동 2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2	00026807	홍덕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0번지 20호 14동 1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0번지 20호 14동 1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3	00026818	강금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7번지 28동 2반 유영아파트 101동 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7번지 28동 2반 유영아파트 101동 108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4	00026823	소영만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285번지 1호 38동 4반 유송아파트 106동 3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285번지 1호 38동 4반 유송아파트 106동 308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55	00026830	정경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38호 10동 4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38호 10동 4반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6	00026831	김영희(공채면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번지 14호 13동 8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번지 14호 13동 8반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57	00026840	이재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08번지 14호 35동 3반 황실그랜드타운 3동 B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08번지 14호 35동 3반 황실그랜드타운 3동 B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8	00026862	심동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호 1반 주공아파트 114동 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호 1반 주공아파트 114동 209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59	00026865	김종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8동 5반 동아아파트 116동 20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8동 5반 동아아파트 116동 20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0	00026870	장신복 88524-484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번지 12호 12동 3반 한국아파트 103동 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번지 12호 12동 3반 한국아파트 103동 501호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61	00026866	이승규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4/5 신영아파트 103동 1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4/5 신영아파트 103동 12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2	00027028	형성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 140동 18동 2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 140동 18동 2반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63	00027027	원종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1호 21동 3반 신성빌라지 2동 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1호 21동 3반 신성빌라지 2동 1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4	00027042	임의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2호 5동 2반 현대아파트 301동 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2호 5동 2반 현대아파트 301동 107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5	00027050	김을진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88번지 2호 18동 1반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488번지 2호 18동 1반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66	00027058	이중수 T.5268-718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0번지 31호 13/5 원일빌라 10동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0번지 31호 13/5 원일빌라 10동 2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7	00027085	박주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3번지 4호 8동 3반 삼백해미리타운 103동 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3번지 4호 8동 3반 삼백해미리타운 103동 5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68	00027086	ENKHTUWSHIN ERDENETUYA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4번지 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4번지 57호	주 소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69	00027100	박주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8번지 19호 20동 3반 한빛아트빌 2동 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8번지 19호 20동 3반 한빛아트빌 2동 503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70	00027105	김하철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8동 1반 동문굿모닝힐아파트 801동 10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8동 1반 동문굿모닝힐아파트 801동 10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71	00027106	김호연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8번지 1호 1동 1반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8번지 1호 1동 1반	수취인불명	08-10-3회차	부과예고
72	00027158	강열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8번지 5호 10동 2반 대영아트빌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8번지 5호 10동 2반 대영아트빌 202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73	00027180	이영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번지 40호 25동 2반 신광빌라 4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번지 40호 25동 2반 신광빌라 401호	폐문부재	08-10-3회차	부과예고

인천광역시서구 제2008-10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11. 26 ~ 2008. 12. 11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김상민외 3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12월 11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korea.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김상민	인천시 서구 검암동 645-3 (8/4) 에스아이연립주택 402호	05버7935	후미등 클리어렌즈 설치, 전면 불법등화설치, 방향지시등청색전구 사용 (전,후면)	제29조제1항	
2	최창준	인천시 서구 연희동 712-10 (48/3) 정진빌라 B동 102호	인천83다 3375	후미등 파손(좌,우측), 전면 방향지시등 파손(우측)	제29조제1항	
3	손학성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39-2 (28/6) 신명아파트 204동 406호	인천80러 2287	격벽제거, 후면 철재보조범퍼 임의설치	제29조제1항 제34조	
4	서삼조	인천시 서구 가정2동 496-1 (26/4) 가정다세대 102호	인천31누 8650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제29조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미주실업(주)외 47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내역 참조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 공 고 기 간 : 2008. 11. 26 ~ 2008. 12. 11(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재차 반송이 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8년 12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7)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대체압류포함)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77, FAX032-560-48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

연번	납부자성명	체납금액	주 소	반송사유
1	미주실업㈜	1,84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사불명
2	김행봉	1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3	남달호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4	심현순	24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폐문부재
5	함명식	65,000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폐문부재
6	한정석	542,7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이사불명
7	이병윤	315,0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폐문부재
8	윤두중	31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폐문부재
9	노원자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이사불명
10	정문숙	1,143,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11	최원환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12	김제화	4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13	홍승득	1,476,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폐문부재
14	권혁구	1,884,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15	정정순	834,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폐문부재
16	오수길	291,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17	전경진	3,531,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수취인불명
18	유한상	503,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폐문부재
19	박병진	195,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폐문부재
20	박인자	33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이사불명
21	김운학	900,000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폐문부재
22	김인식	28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23	김진훈	423,000	인천광역시 석남동	폐문부재

연번	납부자성명	제납금액	주 소	반송사유
24	신영선	1,023,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25	라현주	300,000	인천광역시광역시 서구 심곡동	수취인불명
26	김경민	2,261,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수취인불명
27	구동호	4,790,4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수취인불명
28	석원희	603,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폐문부재
29	한동운	294,1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동	이서불명
30	신태훈	915,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이서불명
31	강형채	183,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수취인불명
32	홍유진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폐문부재
33	최정남	3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폐문부재
34	이은택	182,00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폐문부재
35	이봉철	1,003,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폐문부재
36	김태훈	747,00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폐문부재
37	우순정	829,000	인천 서구 연희동	폐문부재
38	원정자	16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39	노수연	819,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폐문부재
40	정은이	141,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암동	주소불명
41	최정순	74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폐문부재
42	박상규	2,303,000	인천광역시 연희동	수취인불명
43	이명승	219,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폐문부재
44	김동영	33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수취인불명
45	한철용	201,000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수취인불명
46	신재용	1,253,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폐문부재
47	서현석	273,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이서불명
48	고영률	900,00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제척
- 제안서 평가 점수의 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 16 (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Fax 032- 560-415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경리팀
(☎) 032-560-4151로 문의 바랍니다.

자치법규 제정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 및 제척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평가 점수의 산정
제 정 안	“별 지 참 조”
산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

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부터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한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배점한도는 분야별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적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평가	용역· 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 정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
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제5조 관련)

본인은 『 사 업 명 』수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 사항]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 없음

[이행 사항]

1. 제안서 및 평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할 것임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리관 귀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주관적)

□ 업체명 :

평가위원	배점	평점(주관적 평가)						최상위 또는 최하위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총점	
평균점수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인)**

(별지 제4호의2서식)

입찰가격 및 객관적 지표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업 체 별	입찰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객관적)		비 고
	입찰금액	배점	평점	배점	평점	

작성 자 : 직책

성명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인)

(별지 제4호의3서식)

업체별 총괄 순위표

□ 사업명 :

업체별	평 점				협상대상 순 위
	주관적평점	객관적평점	가격평점	총 점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1025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인신조 사유

- 지하수특별회계신설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08년 12월 01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공 인 명	규 격(㎠)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채무관리관인	2.1×2.1		2008.12.01 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출원인	1.8×1.8		2008.12.01 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1.8×1.8		2008.12.01 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2008.12.01 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품출납원인	1.8×1.8		2008.12.01 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직원의 당직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직원들의 근무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영 제17조는 현재 삭제된 조항임에 따라 제3조제1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필요
-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당 40,000원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자, 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2.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 ☎ 032)560-409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 정 이 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시청 및 각 자치구의 당직수당이 작년부터 인상됨에 따라 구 본청 직원의 당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직원들의 근무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 3조 제 1 호 의 “영 제 17 조 의 규 정 ”은 1998.2.2 「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행정기관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의 의미를 상실함. - 또한 영 제17조는 현재 삭제된 조항임에 따라 3조제1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필요 ○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40,000원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자 휴일 전일 속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산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체	“해 당 없 음”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본예산: 96,200천원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당직사령” 이라 함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35,000원” 을 “40,0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50,000원” 을 “6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당 35,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자, 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50,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당직수당)	-----	-----
		-----	40,000원-----
		-----	-----
		-----	-----
		-----	60,000원-----
		-----	-----